

## 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행복나눔 통장』 특약(구 하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상품약관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MMDA 이자결산일 변경, 개인사업자 대상 추가,  
 중복가입 불가 문구 삭제, 수수료 면제종류에 타행 자동이체 추가, 상품명 정정, 카드사명 변경,  
 기부금 산정 기준일 변경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<b>『행복 나눔 통장』 특약(구 하나은행)</b></p> <p><b>제 1 조 약관의 적용</b>                      행복나눔 통장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<u>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과 예금거래 기본약관</u>을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 2 조</b> (생략)</p> <p><b>제 3 조 가입대상</b>                      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<u>실명의 개인 및 법인</u>으로, <u>고객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, 타 수수료면제통장과 중복가입은 불가하다.</u></p> <p><b>제 4 조 이자지급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1. 보통예금 및 <u>MMDA : 매년 6월, 12월의 제3금요일</u>                      2. 저축예금, 기업자유예금 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                      ② (생략)</p> <p><b>제 5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~ 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③ 은행은 아래에 명시된 이 예금가입자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요건(이하 “우대요건”이라 합니다)의 월별실적을 매월 평가하여 우대요건 중 1건 충족 시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익월1일부터 말일까지 월 10회까지 제공하며, 우대 요건 중 2건 충족 시 월 20회까지 제공하며, 우대요건 중 3건 이상 충족 시 월 100회까지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(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 요건)                      1. <u>하나 행복나눔적금</u> 가입 및 유지 시                      2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3. <u>하나SK카드사</u>와의 당행 제휴카드사의 신용(체크)카드</p>	<p><b>『행복 나눔 통장』 특약</b></p> <p><b>제 1 조 적용범위</b>                      “행복나눔 통장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<u>『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』 및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</u>을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 2 조</b> (좌동)</p> <p><b>제 3 조 가입대상</b>                      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<u>실명의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 및 법인</u>으로 <u>고객당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.</u></p> <p><b>제 4 조 이자지급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좌동)                      1. 보통예금 : 매년 6월, 12월의 제3금요일                      2. 저축예금, <u>MMDA</u>, 기업자유예금 : <u>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</u>                      ② (좌동)</p> <p><b>제 5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~ ② (좌동)                      ③ 은행은 아래에 명시된 이 예금가입자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요건(이하 “우대요건”이라 합니다)의 월별실적을 매월 평가하여 <u>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</u> 우대요건 중 1건 충족 시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익월1일부터 말일까지 월 10회까지 제공하며, 우대 요건 중 2건 충족 시 월 20회까지 제공하며, 우대요건 중 3건 이상 충족 시 월 100회까지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(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 요건)                      1. <u>행복나눔 적금</u> 가입 및 유지 시                      2. (좌동)</p>	<p>구행명 삭제</p> <p>조항명 변경</p> <p>구행명 삭제 문구 정정</p> <p>개인사업자 문구 추가 중복가입 불가 삭제</p> <p>결산일 변경 반영</p> <p>문구 명확화</p> <p>상품명변경 정정 반영</p>

<p>를 합하여 월 10만원 이상 이 예금에서 결제 시 4. ~ 5.(생 략) (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 및 우대서비스 내용) 1. ~ 2. (생 략) 3. <b>납부자 자동이체</b>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</p> <p><b>제 6 조 기 타</b> 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특정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하여 등록한 경우 <b>매년 6월말 기준</b>으로 해당계좌들의 12개월간 연 평균잔액의 0.1%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해당 단체 또는 기관에 연 1회 후원금을 제공합니다. 단, 단체 또는 기관별 등록된 계좌수가 (500좌)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, 익년으로 이월하지 않습니다.</p>	<p>3. <b>하나카드사</b>와의 당행 제휴카드사의 신용(체크)카드를 합하여 월 10만원 이상 이 예금에서 결제 시 4. ~ 5.(좌 등) (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 및 우대서비스 내용) 1. ~ 2. (좌 등) 3. <b>납부자 자동이체(타행 자동이체 포함)</b>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</p> <p><b>제 6 조 기 타</b> 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특정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하여 등록한 경우 <b>매년 12월말 기준</b>으로 해당계좌들의 12개월간 연 평균잔액의 0.1%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해당 단체 또는 기관에 연 1회 후원금을 제공합니다. 단, 단체 또는 기관별 등록된 계좌수가 (500좌)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, 익년으로 이월하지 않습니다.</p>	<p>카드사명 변경</p> <p>타행자동 이체 추가</p> <p>기부금 산정 기준일 변경</p>
---	--	---